

내부통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직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 행위로 본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 기준, 하위규정 등(이하 “이 규정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법령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서,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2. “금융소비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받거나 청약을 하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3.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4. “내부통제기준”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5. “준법감시”란 내부통제의 일부분으로서 회사 임직원의 직무 수행 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법령 위반행위를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는 사전적·상시적 통제 과정을 말한다.
 6. “준법감시체계”란 내부통제체계의 일부분으로서 효과적인 준법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

조, 업무분장 및 승인 절차, 의사소통 · 모니터링 · 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7. “법령”이란 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회사와 관계있는 법률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상법 및 그 외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규를 제 · 개정할 때에는 전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 2 장 내부통제 조직 및 역할

제5조(내부통제 조직)

회사의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의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 ②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체계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제7조(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내부통제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 · 확립하는 등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적 · 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직접 또는 준법감시인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체계 ·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운영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기준 위반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2.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위반내용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 마련

제8조(준법감시인)

-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 및 임직원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와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필요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규정을 기초로 준법감시의 구체적인 지침 및 준법감시 규정 준수 매뉴얼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9조(임직원)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내규(이하 "법규"라 한다)를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소비자보호팀과 금융상품의 판매, 사후관리 부서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수행 시 준수절차)

회사는 임직원이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규 등으로 문서화하고 동 내규 등의 내용이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제1절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팀

제11조(준법감시인의 임면)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의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준법감시인 지위 및 임기)

법령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자격을 갖춘 상근 임직원(任職員)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기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별도의 종기는 정하지 않는다.

제13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직무 범위)

- ① 준법감시인은 법령 준수 및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전 예방·사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관련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
 2.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3.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4. 회사의 금융상품 및 업무에 관한 광고 심의
 5. 위의 위반자 발생 시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해 경영진 또는 관련 부서에 시정 요구. 또한 위법사항 등(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에 한한다)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6. 준법감시 업무 담당직원 등에 대한 일부 근무평정
 7. 기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본 조에 따른 적용 법령의 범위는 회사의 운영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법감시팀)

- ① 회사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준법감시팀")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팀은 소비자보호팀으로부터 불완전판매 등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받고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담당 직원 등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검토결과 등 관련 기록은 소비자보호팀에서 보관하고, 이를 준법감시팀에 공유하여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 된 사유로 부당하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준법감시체제 운영

제16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 ① 회사는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2.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및 정정 요구
3.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작성·배포
4.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개정 및 운영
5.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자문
6. 감독당국 및 유관부서에 대한 협조·지원

제17조(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

- 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체제를 통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

-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필요시 정정 요구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방지하여야 한다.
 1. 정관·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2.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의 부의사항
 3.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
 4.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5.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 ②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임직원 교육)

- ① 준법감시인은 “금융소비자보호지침”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위험도·복잡성 등 금융상품의 내용 및 특성을 숙지하고, 윤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교육실시를 위하여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도, 적합·부적합한 금융소비자 유형 및 그 근거 등을 포함하는 상품숙지자료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도, 금융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등의 판매자격을 구분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및 재취득 절차 등 판매자격에 관한 세부사항 및 판매자격 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등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③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사회에서 협의한다.

제21조(타 조직과의 협조)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팀은 내부통제기준 및 준수여부 점검 계획 수립 시 업무상 협력하는 타 조직의 관심사항이 이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조정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내부통제 관련 회사(임직원) 준수사항**제22조(임직원의 의무)**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가 제정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위반 등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상 취득한 금융거래 및 개인·신용정보를 누설, 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회사의 고유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사 이용자의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국가,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회사 이용자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임원의 자격요건)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8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이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본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제24조(불공정거래행위 방지)

- ①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이용자 및 이해관계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정보전달체제)

- ① 회사는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의 비전과 전략,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 및 공유되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향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8조(자체점검)

- ① 회사는 각 부서의 업무가 법규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그룹장 또는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자체점검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임직원 윤리강령의 제·개정)

- ① 회사는 임직원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 이하 같다)을 제·개정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거나 책자 등으로 발간하여 각 부서에 비치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서 운영, 신고자 포상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내부고발제도)

- ① 회사는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은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금융상품의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내부통제규정의 제·개정)

- ① 회사가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단순한 조직체계의 변경, 기타 체제 변경이나 문구 수정 등 내부통제규정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33조(세부사항 위임)

이 규정의 시행 및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2021. 1. 25)

본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

* 부칙(2021. 10. 7.)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 다만, 회사가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규 등의 제·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2021년 12월 25일 이내에서 내규 등의 제·개정 등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 부칙(2024. 1. 25.)

본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